

## 【 9 】 양주군주민소득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출년월일 : 95. 8. 18.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제안이유

각종 유사 융자사업 지원자금과의 중복, 혼선초래 및 기타 자금운영 관리상 미비 점등을 보완하여 2개 특별회계 (세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고자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가. 유사 특별회계 통합 군에서 자율운영 (안 제2조)

-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세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자금,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을 통합 체계적인 관리 및 자금규모 확대 도모.

## 나.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 (안 제3조)

- 기존의 잡다한 지원대상 사업구분 (일반소득, 도시영세민, 우수농고생, 화훼기술, 농어민후계자)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지원 대상 기준 선정 및 선정 기준을 명정.

## 다. 융자지원의 상향조정 및 차별화 (안 제5조 제1항)

- 소득지원사업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까지

- 생활안정자금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까지

라. 대부기간의 조정 및 저리이자 신설 (안 제5조 2항)

-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으로 통일 및 연리 5%의  
이자를 신설 (기존 대상사업별 상환조건 별첨)

마. 자금지원 회수등 운영관리체계 개편 \*(안 제6조, 제11조)

- 군 : 지원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지정금고) :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 업무

※ 군에서 지정금융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바. 상환유예 근거규정 신설 (안 제9조)

- 채무상환의지가 있으나 제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환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해야할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상환유예” 근거규정  
신설.

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관련 조례 정비

- 현행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등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대체 운  
영.

## ※ 기존대상사업별 상환조건표

구 분	지 원 내 역	상 환 조 건	관 리
새마을소득지원	가 구 당 500만원 이내	무 이 자 3년거치 2년상환	내 무 부 훈령 시·군 조례
소 득 금 고	가 구 당 200만원 이내	이 자 율 3% 상환기간 다양	내 무 부 지 침 시·군 조례
영세민생활안정	세 대 당 500만원 이하	이 자 율 5% 2년거치 3년상환	내 무 부 지 침 시·군 조례
영세민생업자금	가 구 당 700만원 이내	이 자 율 6% 5년거치 5년상환	생 활 보 호 법 (재특별회계)
농어민 후계자	1 인 당 3,000만원 이내	이 자 율 5% 5년거치 5년상환	농어촌구조개선 특 별 회 계 법
전 업 농 어 가	1 인 당 5,000만원 이내	이 자 율 5% 5년거치 5년상환	농어촌구조개선 특 별 회 계 법

##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마을소득금고” 및 “세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的 기금 또는 자금
2.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자금
3.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차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②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차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응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

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을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  
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  
교 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응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응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응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응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응자대  
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응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응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응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제6조(응자금의 대부신청) ① 응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응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응자금의 상환) 응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낸1회 균분상환 한다.

제9조(응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응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 31말 현재)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제자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의 반홠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세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양

주군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 【 10 】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5. 8. 31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조례 제4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  
(조례 제37조의 2)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